

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5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매년 증가하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평창군 하수도 요금을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

* 2022년 전국 평균 현실화율 45.6%(우리군 12.66%).

** 목표년(2027년) 우리군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21.5%.

*** 2023년 영업손익 -133억원, 최근 5년 영업손익 -603억원.

2. 주요내용(안 제10조 제2항 별표 1)

가. 하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라,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업종별 누진제 단계를 조정하고

나. 영업손실 개선을 위해 하수도 요금을 3년간(2025년부터 2027년) 매년 25% 인상하고자 함.

가. 누진제 개편	나. 하수도 요금 조정
1) 가정용(6단계 ⇒ 3단계) 축소 2) 일반용(4단계 ⇒ 3단계) 축소 3) 욕탕용(4단계 ⇒ 1단계) 축소 4) 산업용(1단계 ⇒ 1단계) 동일	1) 2025년 25% 인상(모든 업종) 2) 2026년 25% 인상(모든 업종) 3) 2027년 25% 인상(모든 업종)
※ 누진제 :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 적용.	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2024. 8. 29. ~ 2024. 9. 1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4-5호, 상하수도사업소-14267(2024.8.28.)호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[기획예산과-3385(2024.8.26.)호]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[기획예산과-3385(2024.8.26.)호]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[가족복지과-7337(2024.8.27.)호]
- 5) 법제심사 : 적정[기획예산과-4593(2024.9.20.)호]
- 6)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(기획예산과-4934(2024.9.26.)호)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

1.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

- 하수도 사용업종은 「평창군 수도급수 조례」의 상수도업종에 준한다.
-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,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
-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.

2.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

구분 업종	구간별 (㎡)	사용요금 (원)			비고
		2025년	2026년	2027년	
가 정 용	0~10	450	560	700	
	11~30	490	620	770	
	31이상	680	850	1,060	
일 반 용	0~50	1,080	1,350	1,690	
	51~300	1,270	1,580	1,980	
	301이상	1,440	1,800	2,250	
욕 탕 용	㎡당	870	1,090	1,360	
산 업 용	㎡당	1,530	1,910	2,390	

주) 1.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, 주된 하수가 불 분명 할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.

[별표 1]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1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</p> <p>1.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하수도 사용업종은 「평창군 수도급수 조례」의 상수도업종에 준한다. ○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,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. ○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. <p>2.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colspan="4">사용요율</th> </tr> <tr> <th>사용구분 (㎡/월)</th> <th>2018년 ㎡당 단가(원)</th> <th>2019년 ㎡당 단가(원)</th> <th>2020년 ㎡당 단가(원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6">가정용</td> <td>0~10</td> <td>250</td> <td>300</td> <td>360</td> </tr> <tr> <td>11~20</td> <td>270</td> <td>320</td> <td>380</td> </tr> <tr> <td>21~30</td> <td>300</td> <td>360</td> <td>430</td> </tr> <tr> <td>31~40</td> <td>330</td> <td>400</td> <td>480</td> </tr> <tr> <td>41~50</td> <td>370</td> <td>440</td> <td>530</td> </tr> <tr> <td>51이상</td> <td>400</td> <td>480</td> <td>58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일반용</td> <td>0~50</td> <td>600</td> <td>720</td> <td>860</td> </tr> <tr> <td>51~100</td> <td>660</td> <td>790</td> <td>950</td> </tr> <tr> <td>101~300</td> <td>730</td> <td>880</td> <td>1,060</td> </tr> <tr> <td>301이상</td> <td>800</td> <td>960</td> <td>1,15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욕탕용</td> <td>0~200</td> <td>440</td> <td>530</td> <td>640</td> </tr> <tr> <td>201~300</td> <td>460</td> <td>550</td> <td>660</td> </tr> <tr> <td>301~500</td> <td>480</td> <td>580</td> <td>700</td> </tr> <tr> <td>501이상</td> <td>500</td> <td>600</td> <td>720</td> </tr> <tr> <td>전용 공업용</td> <td></td> <td>850</td> <td>1,020</td> <td>1,22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주) 1.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, 주된 하수가 불 분명 할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.</p>	구분	사용요율				사용구분 (㎡/월)	2018년 ㎡당 단가(원)	2019년 ㎡당 단가(원)	2020년 ㎡당 단가(원)	가정용	0~10	250	300	360	11~20	270	320	380	21~30	300	360	430	31~40	330	400	480	41~50	370	440	530	51이상	400	480	580	일반용	0~50	600	720	860	51~100	660	790	950	101~300	730	880	1,060	301이상	800	960	1,150	욕탕용	0~200	440	530	640	201~300	460	550	660	301~500	480	580	700	501이상	500	600	720	전용 공업용		850	1,020	1,220	<p>[별표 1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</p> <p>1.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하수도 사용업종은 「평창군 수도급수 조례」의 상수도업종에 준한다. ○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,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. ○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. <p>2.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rowspan="2">구간별 (㎡)</th> <th colspan="3">사용요금(원)</th> <th rowspan="2">비고</th> </tr> <tr> <th>2025년</th> <th>2026년</th> <th>2027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가정용</td> <td>0~10</td> <td>450</td> <td>560</td> <td>70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11~30</td> <td>490</td> <td>620</td> <td>77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1이상</td> <td>680</td> <td>850</td> <td>1,06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일반용</td> <td>0~50</td> <td>1,080</td> <td>1,350</td> <td>1,69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1~300</td> <td>1,270</td> <td>1,580</td> <td>1,98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01이상</td> <td>1,440</td> <td>1,800</td> <td>2,25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욕탕용</td> <td>㎡당</td> <td>870</td> <td>1,090</td> <td>1,36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산업용</td> <td>㎡당</td> <td>1,530</td> <td>1,910</td> <td>2,390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주) 1.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, 주된 하수가 불 분명 할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.</p>	구분	구간별 (㎡)	사용요금(원)			비고	2025년	2026년	2027년	가정용	0~10	450	560	700		11~30	490	620	770		31이상	680	850	1,060		일반용	0~50	1,080	1,350	1,690		51~300	1,270	1,580	1,980		301이상	1,440	1,800	2,250		욕탕용	㎡당	870	1,090	1,360		산업용	㎡당	1,530	1,910	2,390	
구분		사용요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사용구분 (㎡/월)	2018년 ㎡당 단가(원)	2019년 ㎡당 단가(원)	2020년 ㎡당 단가(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정용	0~10	250	300	36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1~20	270	320	38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1~30	300	360	43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1~40	330	400	48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41~50	370	440	53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51이상	400	480	58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용	0~50	600	720	86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51~100	660	790	95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01~300	730	880	1,06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01이상	800	960	1,15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욕탕용	0~200	440	530	64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01~300	460	550	66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01~500	480	580	7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501이상	500	600	72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용 공업용		850	1,020	1,22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구간별 (㎡)	사용요금(원)		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2025년	2026년	2027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정용	0~10	450	560	7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1~30	490	620	77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1이상	680	850	1,06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용	0~50	1,080	1,350	1,69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51~300	1,270	1,580	1,98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01이상	1,440	1,800	2,25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욕탕용	㎡당	870	1,090	1,36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산업용	㎡당	1,530	1,910	2,39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관계법령 발취

하수도법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590호, 2023. 8. 8., 타법개정]

- 제65조(사용료 등)**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0. 5. 26.>
-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. 27.>
-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.
-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, 부과단가, 재원부족액,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 11. 14.>

하수도법 시행령

[시행 2024. 3. 19.] [대통령령 제34318호, 2024. 3. 19., 일부개정]

- 제36조(점용료 및 사용료)**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, 점용장소,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.

-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,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,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.
-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총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4회 이내의 횟수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22. 12. 6.>

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

[일부개정, 2020.11.06. 조례 제2678호]

- 제10조(공공하수도 사용료)**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. <개정 2020.11.06.>
-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 기준에 따라 부과·징수 한다.
 - ③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.3., 2018.7.27.>

비용추계서 미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없음.

2. 미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
연락처	(033) 330 - 2363